

# 대전광역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335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08. 5. 19  
발 의 자 : 김인식의원 외 6인

## 1. 제안이유

현실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, 양성평등정책을 지속적이고 실효성있게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여성의 양성평등 촉진 및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시는 교육, 홍보 등을 통하여 시민의 양성평등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노력하도록 명시함(안 제3조).
- 나.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에 대하여 명시함(안 제9조).
- 다. 성매매피해자와 탈성매매자의 지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함(안 제17조).
- 라. 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임명 또는 위촉에 관하여 명시함(제29조).
- 마. 여성정책위원회의 회의의 임의성을 정기적 회의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를 년 2회 개최할 수 있도록 명시함(안 제32조).
- 바. 용어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.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여성발전기본법」, 「지방자치법」
- 나. 합의 : 법무통계담당관실, 여성가족청소년과 협의

## 대전광역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대전광역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중 “「여성발전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”을 “「여성발전기본법」”으로 한다.

제2조를 삭제한다.

제3조중 “시”를 “대전광역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”로, “법”을 “「여성발전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시는 교육, 홍보 등을 통하여 시민의 양성평등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한다.

제3조, 제5조, 제6조제1항제2호가목, 제13조제3항, 제14조제1항·제3항, 제26조 및 제40조제1항제4호 중 “남녀평등”을 각각 “양성평등”으로 한다.

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조(시민의 책무) 모든 시민은 법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한 여성관계규정을 준수하고 시의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의 수립·시행에 양성평등실현과 여성의 권익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
제5조중 “대전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 및 소속기관·투자기관의 장은”을 “대전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”으로, “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”를 “적극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”로 한다.

제9조중 “투자기관”을 “투자기관(「지방공기업법」에 의하여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지방공기업을 말한다. 이하 같다)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

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시장은 소관정책을 수립·시행하는 과정에서 당해 정책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할 수 있다.

제14조의 제목 “(남녀평등의식 제고)”를 “(양성평등의식 제고)”로 한다.

제17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시장은 성매매, 인신매매 등을 예방하고, 성매매피해자와 탈성매매자의 상담 및 보호와 치료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, 이들의 자활 및 직업알선과 법적, 교육적, 의료적 지원 등을 하여야 한다.

제2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복지여성국장은 당연직위원이 되고,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
1. 대전광역시의회 의원
2. 대전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장
3. 언론인
4. 여성학 또는 사회학 전공자와 그 밖의 학문분야에서 여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전문가
5. 그 밖의 여성·사회단체에서 여성의 복지향상을 위해 활동하고 있거나 그와 같은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

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2조(회의)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.

②정기회는 년 2회 개최하며, 임시회는 재적위원 1/3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.

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38조, 제40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중 “모·부자가정”을 각각 “한부모가

족”으로 한다.

제44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중 “모·부자복지”를 각각 “한부모가족복지”로 한다.

제50조중 “요보호여성”을 “요보호여성(가정과 사회적인 문제로 인하여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을 말한다. 이하 같다)”으로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대전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호중 “「모·부자복지법」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·부자가정”을 “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한부모가족”으로 한다.

②대전광역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4호중 “모·부자가정세대”를 “한부모가족세대”로 한다.

③대전광역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중 “「장애인복지법」 제38조”를 “「장애인복지법」 제42조”로, “「모·부자복지법」”을 “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중 “「장애인복지법」 제29조”를 “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”로, “「모·부자복지법」”을 “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”으로, “모·부자가정”을 “한부모가족”으로 한다.

제4조제2항제2호중 “모·부자가정”을 “한부모가족”으로 한다.

④대전광역시 공동생활가정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조중 “보건복지부장관”을 “보건복지가족부장관”으로 한다.

⑤대전광역시립장애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중 “보건복지부”를 “보건복지가족부”로 한다.

⑥대전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중 “보건복지부장관”을 “보건복지가족부장관”으로 한다.

⑦대전광역시립정신병원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중 “보건복지부장관”을 “보건복지가족부장관”으로 한다.

⑧대전광역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항중 “건설교통부장관”을 “국토해양부장관”으로 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령에서 정한 여성관계규정을 준수하고 시의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의 수립·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

제5조(적극적 조치) 대전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 및 소속기관·투자기관의 장은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그 참여를 촉진하고 실질적으로 남녀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
제6조(여성정책 시행계획 수립) ① (생략)

1. (생략)
  2. (생략)
    - 가. 남녀평등의 촉진
    - 나. ~ 다. (생략)
  3. ~ 4. (생략)
- ② ~ ③ (생략)

제9조(주요정책의 평가) 시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여성정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부서평가 및 경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.

〈신설〉

제13조(공직 등에의 참여촉진) ① ~ ② (생략)

③ 시장 및 소속기관장등은 소속직원의 보직 관리·승진·포상 및 교육훈련 등에서 남녀평등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하여 여성의 상위직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④ (생략)

법령에서 정한 여성관계규정을 준수하고 시의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의 수립·시행에 양성평등실현과 여성의 권리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
제5조(적극적 조치) 대전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-----  
-----  
-----  
-----양성평등-----  
-----적극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제6조(여성정책 시행계획 수립) ① (현행과 같음)

1. (현행과 같음)
  2. (현행과 같음)
    - 가. 양성평등의 촉진
    - 나. ~ 다. (현행과 같음)
  3. ~ 4. (현행과 같음)
- ② ~ ③ (현행과 같음)

제9조(주요정책의 평가) ① -----  
-----투자기관(「지방공기업법」에 의하여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지방공기업을 말한다. 이하 같다)-----

② 시장은 소관정책을 수립·시행하는 과정에서 당해 정책이 여성의 권리와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기 위하여 성별 영향평가를 할 수 있다.

제13조(공직 등에의 참여촉진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

③-----  
-----양성평등-----  
-----

④ (현행과 같음)

<p><u>제14조(남녀평등의식 제고)</u> ① 시장은 가정·학교·사회교육에 있어 남녀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.</p>	<p><u>제14조(양성평등의식 제고)</u> ①----- -----양성평등----- ----- -----</p>
<p>② (생 략)</p> <p>③ 시장은 교육기간이 2주 이상인 교육과정에 남녀평등의식제고를 위한 교과목이 편성되도록 하여야 하며, 여성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한 전문교육과정을 편성·운영하여야 한다.</p>	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----- -----양성평등----- ----- -----</p>
<p><u>제17조(복지증진) ① ~ ④ (생 략)</u> <u>〈신 설〉</u></p>	<p><u>제17조(복지증진) ①~④ (현행과 같음)</u></p>
	<p>⑤ 시장은 성매매, 인신매매 등을 예방하고, 성매매피해자와 탈성매매자의 상담 및 보호와 치료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, 이들의 자활 및 직업알선과 법적, 교육적, 의료적 지원 등을 하여야 한다.</p>
<p><u>제26조(유공자 포상)</u> 시장은 남녀평등의 촉진,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, 여성의 복지증진에 현저하게 공헌한 개인 또는 단체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안자 중 시정발전에 공적이 큰 자에게 「대전광역시 포상조례」의 규정에 의거 포상할 수 있다.</p>	<p><u>제26조(유공자 포상)</u> -----양성평등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
<p><u>제29조(구성 등) ① ~ ② (생 략)</u></p> <p>③ 위원은 복지여성국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</p>	<p><u>제29조(구성 등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u></p> <p>③ 복지여성국장은 당연직위원이 되고,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</p>
<p>1. 대전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장 2. 여성언론인 3. 여성·사회단체에서 여성의 복지향상을 위해 활동하고 있거나 그와 같은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4. 여성학 또는 사회학 전공자와 그 밖의 학문분야에서 여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전문가</p>	<p>1.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2. 대전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장 3. 언론인 4. 여성학 또는 사회학 전공자와 그 밖의 학문분야에서 여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전문가 5. 그 밖의 여성·사회단체에서 여성의 복지향상을 위해 활동하고 있거나</p>

	그와 같은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
제32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.  〈신설〉	제32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 시회로 구분한다. ② 정기회는 년 2회 개최하며, 임시회는 재적 위원의 1/3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.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38조(여성발전·복지기금) 여성, 여성단체 의 발전과 건전한 육성 및 저소득 <u>모·부</u> <u>자가정</u> 의 생활안정, 복지증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여성발전·복지기금(이하 “기금” 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용한다.	제38조(여성발전·복지기금) ----- ----- <u>한부모</u> <u>가족</u> ----- ----- -----
제40조(기금의 용도) ① (생 략) 1. ~ 3. (생 략) 4. <u>남녀평등</u> 의 실현과 여성발전 등을 위한 사업 5. 저소득 <u>모·부자가정</u> 에 대한 자녀교육 비·직업훈련 및 생계비·질병치료비·주 택 임대지원금 6. <u>모·부자가정</u> 보호지원을 위한 사업비 ② (생 략)	제40조(기금의 용도) ① (현행과 같음)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<u>양성평등</u> ----- ---- 5. ----- <u>한부모가족</u> ----- ----- ----- 6. <u>한부모가족</u> ----- ② (현행과 같음)
제44조(구성) ① ~ ③ (생 략) 1. (생 략) 2. 여성발전 및 <u>모·부자복지</u> 관련분야 종사자 3. 여성 또는 <u>모·부자복지</u> 분야에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	제44조(구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<u>한부모가족복지</u> ----- ---- 3. ----- <u>한부모가족복지</u> ----- -----
제50조(요보호여성지원협의회) <u>요보호여성</u> 의 지원대책 협의 및 여성의 건전한 사 회생활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요 보호여성지원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 다)를 둔다.	제50조(요보호여성지원협의회) <u>요보호여성</u> (가정과 사회적인 문제로 인하여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을 말한다. 이하 같 다) ----- -----

# 관련 법령

## □ 「지방자치법」 제90조 및 제113조 내지 제116조

**제113조 (직속기관)**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(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한다), 소방기관, 교육훈련기관, 보건진료기관,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.

**제114조 (사업소)**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.

**제115조 (출장소)** 지방자치단체는 원격지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.

**제116조 (합의제행정기관)**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.  
② 제1항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## □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4조제1호 내지 제5호

**제4조 (정의)**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모" 또는 "부"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.
  - 가.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(遺棄)된 자
  - 나.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

- 다. 미혼자{ 사실혼(事實婚)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}
  - 라.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
2. "한부모가족"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.
  3. "모자가족"이란 모가 세대주{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(世代員)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} 인 가족을 말한다.
  4. "부자가족"이란 부가 세대주{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} 인 가족을 말한다.
  5. "아동"이란 18세 미만(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한다)의 자를 말한다.

#### □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시행규칙 제3조

**제3조 (보호대상자의 범위)** ①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범위는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보호대상자의 최저생계비·소득수준 및 재산정도등을 고려하여 보호의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으로 한다.

# 대전광역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찬성의원서명